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251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하 담당변호사 이송하

변 론 종 결 2021. 5. 4.

판 결 선 고 2021.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누나인 C과 혼인하였다가 2010년경 이혼하였고, 원고와 C이 부부관계가 유지된 199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10여 년간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체에서 임직원으로 일하면서 원고의 사업 운영을 도왔다.

나. 피고는 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999. 5. 12. 서울 강서구 D 다세대주택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99. 12. 31. 원고의 동생 F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03. 6. 26.부터 원고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였다. 원고는 2006. 10. 24. F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치고, 곧바로 F으로부터 피고에게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21. G(췌)에게 이 사건 주택을 대금 1억900만원을 받고 매도한 후 2018. 12. 26.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0. 24. 당시 처남이었던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2018. 10. 21. 이 사건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여 매매대금 1억900만원을 받았으므로, 그 매매대금 1억900만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06. 10. 24. F을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을 주고받지는 않았던 점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2, 5, 11~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10. 24. 이후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실질적으로 사용관리처분하였던 사실, 피고가 2009. 11. 30. 이 사건 주택에서 인근의 주택(서울 강서구 H건물 I호)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임차인 J에게 차임 없이 보증금 6,500만원에 임대할 때에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의 수령을 피고가 직접 하였으며, 피고의 이러한 처분관리행위에 대해 원고가 그 당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가 당시 처남이었던 피고에게 서울로 이사하여 원고의 사업체 운영을 돕도록 하였던 점까지 더해 보면, 원고가 사업체 운영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부부관계가 원만하던 시기에 자신의 사업을 지근거리에서 돕는 처남에게 살림집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것인데, 2010년경 이후로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을 하게 되자 그제야 비로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